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24. 7. 1.>

보내는 사람

세무서장

□□□□□

받는 사람

님 귀하

□□□□□

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

(결정·경정용)

채무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 지			

의무상환액 상세 내용 (단위: 원)

소득구분	소득 발생연도	당초 의무상환액	결정(경정)된 의무상환액	추가 납부할 의무상환액
근로소득				
사업소득				
연금소득				
퇴직소득				
합 계				
납부기한	년 월 일			

- 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의 결정·경정에 따라 위 의무상환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-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(www.icl.go.kr)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.

납부할 계좌번호 :	납부가능시간 : (: ~ :)

-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세 무 서 장 직인

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(☎)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(보존용지 60g/㎡(재활용품))